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안전관리 표지 게시
의무화 》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6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제221546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안전관리 표지 게시 의무화 (안 제55조의3 신설)	2

I.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제221546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2.

다. 회 부 일 : 2025. 12.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3. 검토의견

가.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안전관리 표지 게시 의무화 (안 제55조의3 신설)

개정안은 공공관리주체¹⁾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안전등급 등을 적은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5조의3(안전관리 표지의 게시) ① 공공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안전등급 등을 적은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한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기재사항과 게시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현행법 제55조²⁾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³⁾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동 시스템은 일반 국민도 접속하여 시설물의 명칭, 종별, 최근점검진단일, 안전등급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https://www.fms.or.kr>

【 FMS를 통한 시설물안전관리 현황 검색 예시】

No	시설물명	시설물 구분	시설물 종류	종 별	점검 진단 구분	최근 점검 진단일	안전 등급	차기 점검 진단일	최근 성능 평가일	성능 등급	위치	관리 주체 구분	QR 다 운 로 드	조 화 수
1	국회박물관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2종	정밀안전점검	2025-09-16	B등급	2026-06-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2	국회앞지하차도	터널	지하차도	2종	정밀안전점검	2024-12-03	B등급	2025-1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3	국회의사당 연결 보행육교	교량	육교	3종	정기안전점검	2025-06-30	B등급	2025-12-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4	국회의사당본관	건축물	대형건축물	1종	정밀안전진단	2023-11-20	C등급	2025-06-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3
5	국회의원회관	건축물	대형건축물	1종	정밀안전진단	2025-02-02	B등급	2026-06-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1
6	국회의정관	건축물	대형건축물	2종	정밀안전점검	2023-06-27	B등급	2026-06-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7	지하철 9호선 909공구(국회의 사당역)	건축물	철도역시설	2종								민간		

※자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시설물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에서 “국회”로 검색)

*주-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외에 시설물의 주요제원, 안전점검등·성능평가 이력, 보수·보강 이력 등이 등록되어 있음.

또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각 시설물의 QR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QR코드 접속을 통해 휴대폰 등으로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⁴⁾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QR코드 제공을 이를 시설물에 부착함으로써 안전점검 이력 확인 등 시설물 관리에 활용하고,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현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권한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5. 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5.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정보의 확인·점검

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FMS 제공 QR코드를 통한 시설물안전관리 정보 검색 예시 】

국회의사당본관 QR코드	QR코드를 통한 접속 화면																												
	> 시설물 안전관리 정보 <table border="1"> <tr> <td>시설물명</td> <td>국회의사당본관</td> <td>종별</td> <td>1층</td> </tr> <tr> <td>시설물구분</td> <td>건축물</td> <td>시설물종류</td> <td>대형건축물</td> </tr> <tr> <td>관리주체</td> <td>국회사무처</td> <td>관리주체구분</td> <td>공공</td> </tr> <tr> <td>최근점검 진단일자</td> <td>2023-11-20</td> <td>점검진단 구분</td> <td>정밀안전진단</td> </tr> <tr> <td>관리감독기관</td> <td>국회사무처</td> <td>안전등급</td> <td>C등급</td> </tr> <tr> <td>준공 (사용승인)일</td> <td>1975-08-15</td> <td>내진설계 적용유무</td> <td>미적용</td> </tr> <tr> <td>시설물 주요제원</td> <td colspan="3"> 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복합구조 연면적: 81,443.8 m² 지상 7층, 지하 1층 </td> </tr> </table> ☎ 위험신고 📄 설문조사 📄 상세보기  국토안전관리원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	시설물명	국회의사당본관	종별	1층	시설물구분	건축물	시설물종류	대형건축물	관리주체	국회사무처	관리주체구분	공공	최근점검 진단일자	2023-11-20	점검진단 구분	정밀안전진단	관리감독기관	국회사무처	안전등급	C등급	준공 (사용승인)일	1975-08-15	내진설계 적용유무	미적용	시설물 주요제원	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복합구조 연면적: 81,443.8 m ² 지상 7층, 지하 1층		
	시설물명	국회의사당본관	종별	1층																									
시설물구분	건축물	시설물종류	대형건축물																										
관리주체	국회사무처	관리주체구분	공공																										
최근점검 진단일자	2023-11-20	점검진단 구분	정밀안전진단																										
관리감독기관	국회사무처	안전등급	C등급																										
준공 (사용승인)일	1975-08-15	내진설계 적용유무	미적용																										
시설물 주요제원	형식: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복합구조 연면적: 81,443.8 m ² 지상 7층, 지하 1층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시스템 운영 및 사용법 문의)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TEL : 1588-8788 FAX : 055-771-8345 Copyright (c) 2020 KALIS . All Rights reserved.																												

개정안은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56)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5) 관리주체별 시설물 현황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합계
시설물 수 합계	13,105	112,791	57,674	183,570
공공관리주체 소관	8,242	30,717	49,253	88,212
민간관리주체 소관	4,863	82,074	8,421	95,358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2025.12.31. FMS 등록 기준

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안전등급 등을 전자적 방식의 인식 표지를 포함한 방법 등으로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공공관리주체의 책임성과 국민의 알 권리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⁷⁾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 터널
 - 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 7) 안전관리를 위한 게시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현행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등이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QR코드 등을 통해 시설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관리주체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